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해설가이드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Guide Book

2021. 12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1.0	2013년 11월 30일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해설가이드 제정
2.0	2021년 12월 30일	· 개정

Contents

- Ⅰ. 전자문서 이용의 필요성 4
- Ⅱ.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9
- Ⅲ. 도움말(FAQ) 13

[부록]

- 1. '21년도 고시 개정 주요 내용 20
- 2.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25
- 3. 공인전자문서센터 홈페이지 소개 26

1. 전자문서의 필요성

✍️ 종이문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점점 쌓여가는 종이문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종이문서는 검색 및 활용이 어렵습니다.
 - 종이문서에 기록하기는 쉽지만 문서를 검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종이문서의 보관 및 관리는 어렵습니다.
 - 화재나 침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정보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의 보관·관리에 많은 비용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 한 장의 종이는 가볍지만,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서창고가 필요합니다.



✍️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17그루와



종이 1톤을 생산하려면



전력 4200kw/h가
필요하며



Paperless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IT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 25만 리터가
필요합니다.



✍️ 종이문서의 이용으로 많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인쇄 : 종이문서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유통 : 종이문서는 인편,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관 : 문서보관 창고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검색 : 문서검색과 활용이 어렵습니다.
- 폐기 : 정보유출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종이문서의 불편함과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전자문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문서작성 · 유통 · 보관 ·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서보관 · 관리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시 ·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용편의성이 뛰어납니다.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인정으로 각종 법적분쟁 및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수명과 화재 · 침수와 같은 재해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유출, 위 · 변조 등과 같은 보안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문서보관 : 자체보관

종이문서 작성 → 문서보관

문서보관의 보안사고 위험 높음(문서유실, 훼손, 부패, 정보유출 등...)



효율적인 문서보관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종이문서 작성 → 전자화문서 생성 → 전자화문서보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2020.6.9.>

제5조의2(전자문서의 보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 수신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 · 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0. 1. 1.]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II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란?

- 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History

1999. 2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부여)
2005. 3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도입)
2006. 1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 및 기술규격 개발
2007.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1호 사업자 지정
2007. 5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전자화문서 제도 도입)
2008. 10	전자화시설 및 장비인증 시행
2011. 1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9호 사업자 지정
2012. 6	제명 변경(전자거래기본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명칭변경(공인전자문서보관소 → 공인전자문서센터)
2020.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원본폐기 근거마련)
2021. 8	공인전자문서센터 고시 개정(기술규격 폐지 및 신기술 도입 근거마련 등)



공인전자문서센터 란?

-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필요성

-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
 -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업무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 문서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문서보관·관리의 효율성**
 - 문서보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문서보관 및 검증방법이 필요합니다.
 - 각종 보안사고(위·변조, 해킹 등)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서보관의 법적효력 확보**
 - 법적분쟁 및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증거력 확보)
 - 각종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관대행의 효력)

공인전자문서센터 주요서비스

- 전자문서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관서비스 :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열람서비스 : 보관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검색 할 수 있습니다.
 - 발급서비스 : 보관문서는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비스 : 보관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합니다. (증명서 발급)

문서보관 방법에 따른 법적효력 비교

- 기업 자체적으로 문서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문서보관·관리의 안전성과 내용 불변경성에 대해 직접 증명하여야 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문서는 문서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 받습니다.

구분	자 체 보 관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제 도	• 지정·허가·등록·인가제도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재정·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확인하고 지정절차·방법에 따라 지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문서보관 요건준수	• 관계법령이 정하는 문서보관 요건 준수여부에 대해 증명해야 함 (입증책임 부담 존재)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문서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 ¹⁾ 함 (법 제5조①,②, 제31조의6)
전자문서 위·변조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내용 위·변조 여부 확인 불가	• 전자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추정 ²⁾ 함 (법 제31조의7①,②)
종이문서 폐기	• 법률상의 의무 보관기간까지 보관(종이문서 폐기 불가)	• 전자화고시에 따라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의 내용과 형태가 동일함이 인정되며, •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종이문서는 폐기 가능함

¹⁾ 간주(看做) :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반복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발생시킴

²⁾ 추정(推定) :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킴

문서보관에 따른 문서보안 기술의 효력 비교

- 자체 보관되는 전자문서는 문서보관·관리의 안전성과 내용 불변경성에 대해 직접 증명해야 함에 따라 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등의 보안기술을 자체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자체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서명	전자서명 WORM	전자서명 WORM 타임스탬프	전자서명 WORM 시점확인
본인확인				
무결성	●	●	●	●
부인방지				
데이터 보안 (기밀성)	●	●	●	●
WORM 보관	×	●	●	●
시점확인/검증	×	×	△	●
유효성 검증	×	×	×	● (센터에 보관된 문서의 진정함을 추정)
증명주체	자체 증명	자체 증명	자체 증명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를 통해 증명)

- 전자서명은 진정성립 등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타임스탬프와 WORM¹⁾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¹⁾ WORM(Write Once Read Many) : 저장매체에 단 한번만 기록되며, 재기록 및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매체

III FAQ

Q1 전자문서란 무엇인가요?

저는 직장에서 이메일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공문서나 계약서류 전달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이메일을 이용합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인가요?

A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컴퓨터와 같이 연산작용을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필요에 의하여 나중에 재현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으로 특별한 형식(또는 표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라 함은 동영상, 음성 등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록(Record)을 의미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는 개방형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메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송·수신 기능을 보유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도 연산 작용을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해당합니다.

전자문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법적효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수신 여부를 수신자가 부인하였을 때에 수신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또는 확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수행이 필요합니다.

〈참고 국제 규범〉

전자문서의 개념은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가 채택한 전자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제2조 (a)항의 “데이터메시지란 전자문서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텔레카피 등을 비롯하여 전자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최근 UN은 국제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을 제정하고 전자적 의사표시로 표현합니다.

Q2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전자화문서”는 “전자문서”의 종류 중 하나로, 넓은 범위의 전자문서에 속합니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를 전자화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전자문서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전자적 형태로 수행되어진 문서뿐만 아니라 작성은 전자매체에 의하지 않으나 그 이후의 송신·수신 혹은 저장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문서인 전자화문서도 전자문서에 포함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Q3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부터 입사서류(입사지원서, 보안서약서 등)를 전자문서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이서류에 지원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왔는데, 이를 보관·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전형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A

신입사원 채용 시 요구하는 입사지원서와 보안서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받을 수 없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전자문서로 작성된 입사지원서 및 보안 서약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됨을 의미 합니다.

〈전자문서의 기능〉

전자문서도 종이문서가 갖는 정보적 기능과 증명적 기능, 상징적 기능 등을 수행하고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는 작성자의 신원확인고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합니다.

- ◆ 정보적 기능 : 문서가 특정 사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능
- ◆ 증명적 기능 : 문서에 의해 일정한 법률관계를 공공기관 및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능
- ◆ 상징적 기능 : 문서에 기재된 특정 단어 또는 이미지가 무언가를 표상하는 기능

[참고] 각종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예시)

법률	해당 조항
공증인법	공증인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공증의 효력을 갖는다.(제3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소송법)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제5조 제2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독촉절차에서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3조 제2항)
상법	전자선하증권은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제862조 제1항)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26조 제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4조 제2항) 별표에 나열된 총 32개 법률, 61개 조항은 예시규정
특허법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에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28조의3 제2항)
행정심판법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54조 제3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제9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에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30조 제2항)

Q4 소송을 할 때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
소송을 할 때 전자문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증거자료로 채택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종이문서를 폐기하였다면 법원에서 전자화문서를 증거자료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전자문서도 전자화문서를 포함해서 모두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대상되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전자소송법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로 제출할 수 있고,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소송법 제5조)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전자화문서 포함)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증명서를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¹⁾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만한 유효한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하고,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거력(증명력)이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칙 제120조에서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출력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서증의 대상이 되어 증거조사의 대상되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²⁾으로 형식적 증거력이 있습니다. 이는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진실되게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의미³⁾합니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부합되고 인증까지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고 입증한 경우 법원에 증거로써 채택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⁴⁾

¹⁾ 이종구,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 전자문서 제도의 오해와 이해", 「SW Insight」, (2009 OCTOBE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10, 78~79면.
²⁾ 임상혁,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8권 제1호(2004. 2), 298~300면
³⁾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4판), 박영사, 2008, 449면.
⁴⁾ 정원용 이해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6, 51면.

Q5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법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 총무팀 담당자입니다.

보험업무 특성 상, 가입신청서, 보험금 지급신청서 등의 종이서류가 작성되고 있으며, 보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던 중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내부문서, 개인정보가 담긴 계약서류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기 위하여 확인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나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정부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통해 인력, 자본, 시설 등의 지정 및 유지 조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수시 업무 보고 등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요건

구분	세부 기준
인력·기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것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6명 이상
재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법인 : 자본금 40억원 이상 ○ 비영리법인 :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 설비 ○ 전자문서 보관 날짜·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용 훼손 변경의 방지 조치', '정보보안의 준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 의무화', '임원 또는 직원의 공무원 의제', '이용자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조항을 전자문서법에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 준수 여부 등은 정기점검 및 수시 확인을 통해 관리 하고 있습니다.

Q6

전자문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과 내부시스템 이용의 차이점과 특별한 효력은?

저희사장님이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주최하는 CEO간담회에 참석하신 후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이용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와 내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법적 효력 등)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맡기는 것으로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어 개인과 기업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할 실익이 큼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 제31조의6)

[참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효력

효력	법률 해당 조항
전자문서 보관대행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됨(법 제31조의6)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일시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됨(법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성 추정	
발급 증명서의 진정성 추정	
전자문서의 보관 및 폐기	전자화문서의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한 이후에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하여 보관하게 되면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음 이때 전자화고시 제52조의 "보관자가 지정한 시스템"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자를 의미하며, 동법 제31조의2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관 대상과 이관할 보관시스템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내부 생성 문서를 자체 보관하는 경우, 각종 법령상의 보존의무를 만족하려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등의 이슈 발생 시, 증거 채택을 위한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에 대한 입증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관련 법·시행령 개정 내용('20년도 기준)

종이·스캔문서 이중보관으로 인한 부담 해소 위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스캔문서의 원본(종이)문서 폐기근거 상향* 입법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고시 제2017-7호)」 제53조(대상문서의 폐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전 [법률 제14907호, 2017. 10. 24.,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735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법률 제14907호, 2017. 10. 24.,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735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생략)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 ⑤ (생략)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 ⑤ (현행과 같음)

공인전자문서센터 관련 '21년도 고시 개정 주요 내용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 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 원본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불변경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 삭제
 - *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서로 동일하다는 증명
 - **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명
- 정보패키지 기술규격*을 강제하는 규정 삭제
 - * 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발급하는 형태 및 방법을 특정하게 규정한 규격서
- 전자문서 보관설비 구축·증축 시 클라우드 및 외부 IDC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수립

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 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구분	조항	구 조문	신 조문
이용자와 센터간 인터페이스	제4조 (전자문서 보관설비)	⑤ 센터는 센터이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3. “공인전자문서센터 연계 인터페이스”(이하 “연계 인터페이스”라 한다) 기술규격에 따라 센터간 전자문서를 이관하거나 수관하는 기능 4. 센터간 시스템 플랫폼 및 언어 독립성 유지 기능	⑤ 센터는 센터이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3.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수관” 기술규격에 따라 센터간 전자문서를 이관하거나 수관하는 기능 4. 삭제
	제6조 (시스템 연계)	2. “연계 인터페이스”기술규격에 따라 외부 시스템에서 센터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2. 외부 시스템에서 센터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전자문서 보관설비	제9조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설비)	① 센터는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회선 ~~~ 라.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되는 네트워크 회선	① 센터는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회선 ~~~ 라. 삭제

구분	조항	구 조문	신 조문
전자문서 보관설비	제9조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설비)	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 ~~~ 나. 라우터의 이중화 (신설)	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부네트워크 구성 ~~~ 나. 삭제 다.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 용도로만 구성
	제12조 (감시·통제)	센터는 출입 감시·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침입감지 및 경고 기능 가. 침입감지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기능 나. 침입감지장치가 침입을 감지하였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각 알리는 기능 다. 침입감지·경보장치와 연결된 침입 발생 위치 확인 기능	센터는 출입 감시·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제22조의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센터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센터가 제4조에서 제9조, 제15 조에서 제2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센터의 일부 또는 전체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서비스 이용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 항에 따른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이용
	제22조의3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 등 이용)	(신설)	센터가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10조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분	조항	구 조문	신 조문
사업자 부담 완화	제4조 (전자문서 보관설비)	① 센터는 전자문서의 등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6.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 정보패키지”라 한다) 기술규격에 따른 정보패키지의 생성 및 검증 기능 ③ 센터는 전자문서의 열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3. 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시 전자문서 내용의 수정, 복사, 저장, 화면캡처 등 방지 기능 ④ 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2. “정보패키지” 기술규격에 따른 전자문서 발급 기능	① 센터는 전자문서의 등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6.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 정보패키지”라 한다)의 생성 및 검증기능 ③ 센터는 전자문서의 열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3. 이용자의 전자문서 열람 시 보관중인 전자문서 내용의 수정, 복사, 저장 등 방지 기능 ④ 센터는 전자문서의 발급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2. 삭제
자격분야	제23조 (자격분야)	(신설) ※ 타 고시 폐지에 따라 이관	제23조(자격 분야) 영 제15조의4제 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센터가 갖추어야 할 인력의 자격 분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경력분야	제24조 (경력분야)	(신설) ※ 타 고시 폐지에 따라 이관	제24조(경력 분야)영 제15조의4제 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센터가 갖추어야 할 인력의 경력 분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 하여야 한다. ~~~

○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 원전자문서 변환업무 등 삭제
- 원본증명서 발급방식을 필수에서 이용자 선택으로 변경

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

구분	조항	구 조문	신 조문
기술중립성 강화	제10조 전자문서 등록업무	③ 센터는 이용자의 등록 요청에 대한검증이 완료된 후, “정보패키지” 기술규격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패키지 포맷으로 저장한다.	③ 센터는 이용자의 등록 요청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 전자문서를 저장한다.
	제20조 시스템 연계업무	1. “연계인터페이스” 기술규격에 따라 연계한다.	1. 삭제
사업자 부담 완화	제24조 물리적 보안대책	6.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 기능을 갖는 감시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가.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나. 침입감지시스템	6.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부록2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21.12 현재)

구분	법인명	지정일자	홈페이지	전화번호
1	KTNET	‘07. 2.23	www.docuon.co.kr	02-6000-2168
2	LG CNS	‘07. 4.20	docubank.lgcns.com	02-6363-5000
3	하나금융티아이	‘08.12.30	www.hanaceda.com	070-7835-9201
4	더존비즈온	‘11.11.15	www.d-datazone.com	1670-1474

부록3 공인전자문서센터 홈페이지 소개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화인증 제도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홈페이지 URL : www.npost.kr



주요 콘텐츠

-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전자화인증 제도 소개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및 전자화 인증현황 안내
-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전자화문서 제도 관련 정보제공 (법, 고시, 기술규격 등)
- 제도 관련 주요행사 안내, 보도자료, 질의답변 등

공인전자문서센터 해설가이드

인쇄일 : 2021년 12월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Copyright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본 전자화문서 제도 해설가이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